

서귀포시 공고 제2025-2321호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참여업체 모집 공고(6차)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희망자는 2025. 10. 2.(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9. .

서 귀 포 시 장

- 1. 사업명**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2. 사업비** : 12,100천원(국비 6,050, 지방비 4,840, 자부담 1,210)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3.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세부적인 사항은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함
- 4.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VAT 제외
※ 지원한도 :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 지원
⇒ **1개의 배출구에 직결로 연결된 방지시설이 다수일 경우라도, 1개 시설 (배출 및 방지)만 지원**
※ 다만, 신청서 접수결과, 지원 업소수에 따라 지원대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수량 대비 승인수량이 변동될 수 있음
- 5.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 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별표 9의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시설(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

방지시설명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1) 1. 원심력집진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3호)	전류계	전류계
2) 2. 세정집진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전류계	전류계
3) 3. 여과집진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5호)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4) 4. 전기집진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전류계	전류계
5) 5. 흡수에 의한 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8호)	전류계	전류계, pH계
6) 6. 흡착에 의한 시설(시행규칙 [별표 4] 제9호)	전류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우선지원)

- ① 방제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 ② 기존시설
- ③ 신규시설 중 5종
- ④ 신규시설 중 4종

※ 동일법인 또는 동일 대표자가 배출사업장 2개 이상 신청 시 중복 사업장 1개 이상은 후순위 또는 예산초과 시 대상자에서 제외 - 2023년도 보조금 심의 시 지적사항 반영

※ 배출업체의 재산 중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하여 재산의 권리에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재산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게 사업동의 및 권리의 제한 등에 대한 합의 후 합의서(별도 서식 첨부)를 제출 하여야 함 - 2024년도 보조금 심의 시 지적사항 반영

나.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다.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설치하는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신고필증 상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6. 방지시설 설치 사업참여 기준 및 지원 사업장 선정(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선정)

가. 사업 참여기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에 등록된 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 의뢰

나. 지원 사업장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해당 관청(서귀포시)에 제출
- 지원 사업장은 방지시설 견적서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고, 해당 관청(서귀포시)은 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보조금 심의(선정심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적격업체 승인 후 개별 통보

7. 신청기간 : 2025. 9. 2.(화) ~ 10. 2.(목) 18:00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8.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접수

나.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응모자 부담)

- 보내실 곳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접수 마감일인 2025. 10. 2.(목)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9. 주요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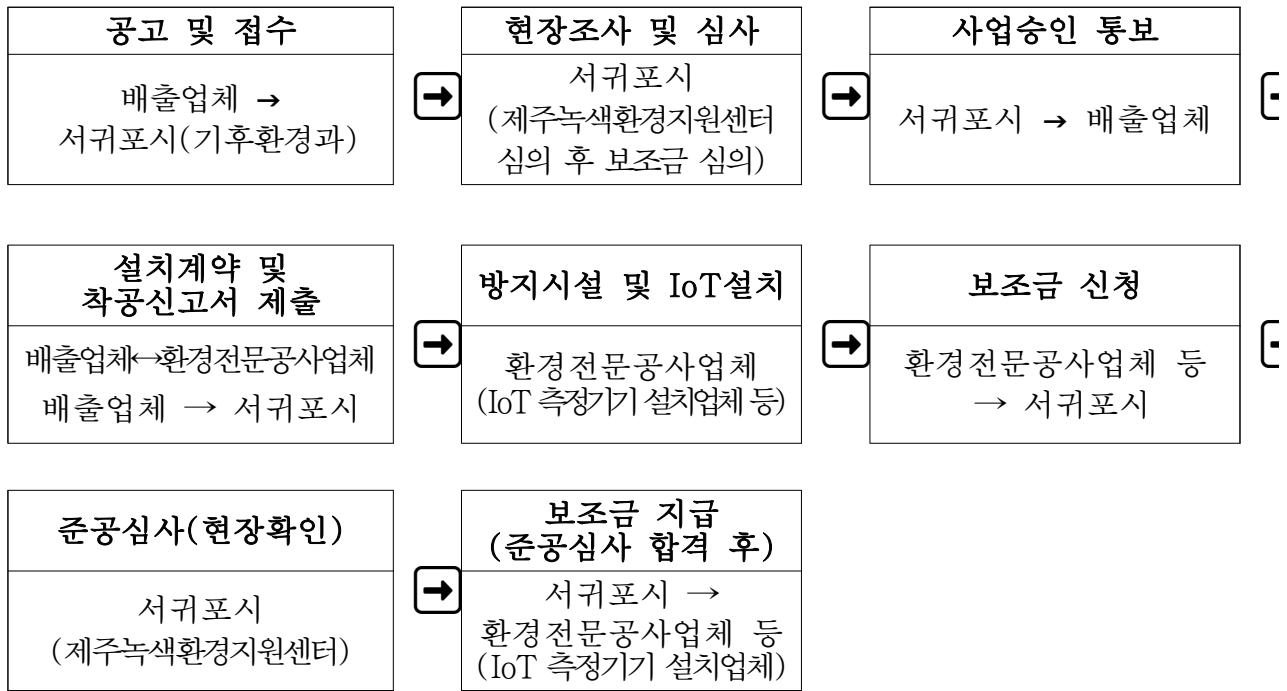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설치 계획서 1부 (서식2)
 - 가. 사물인터넷 부착 및 견적서 1부
 - 나. 공인시험기간(KOLAS)의 성적서 및 KS규격품인증서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장 위치도 1부 (서식 3)
 - 사업자 등록증(신청업체, 설치업체)사본 각 1부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서식4)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설치업체)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5)
 - 보조금 반납 협약서 1부(서식6)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설치업체) 각 1부 (서식 7)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 (서식 8)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청렴 이행서약서(배출업체, 처리업체) 각1부(서식9, 서식10)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1부(서식11, 서식12, 서식13)
-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의사결정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1부
- 사업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대한 합의서 1부(서식14)
-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1부
- 위임장 1부(서식15)

⇒ 반드시 첨부서류 확인하여 순서대로 편철 및 인덱스 필수

※ 첨부서류 누락 및 보완요청 서류 미비 시 선정심의 대상에서 제외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후 제출

10.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사업신청

-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서식1)를 지자체에 제출
-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서식 2),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 신청서 검토

-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 시 현장조사)
- 서귀포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 방지사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의 경우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현장조사 가능

○ 사업승인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붙임1)
- 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서귀포시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붙임2)를 지자체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사본(계약체결 내용),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기타지출요구자료 등을 지자체(서귀포시)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측정기기 설치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2023.6.)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준공 심사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붙임3) 전송 확인서(붙임4)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보조금 지급

- 지자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신청 >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전자민원청구용) 제출 가능

11. 보조금 회수

가.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나. (보조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광주광역시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12. 추진일정

- 가. 신청서 접수 : 2025. 9. 2.(화) ~ 10. 2.(목) 18:00
나. 현장조사 및 심사 : 2025. 10월 초(예정)[신청 날짜에 따라 탄력적 적용]
다.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2025. 10월(예정) 중 개별 통지
라. 방지지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 : 청구서 제출후 1개월 이내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 사업 담당자 (☎064-760-2925)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서귀포시 결정에 따른다.

《지원안내 및 서식》

- ▶ 신청서 서식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의(고시/공고) 및 서귀포시 홈페이지www.seogwipo.go.kr → 서귀포시소개 → 행정조직 → 청정환경국 → 기후환경과 → 자료실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서식(한글서식 및 엑셀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비, 지원조건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064-760-2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청림혁신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청림혁신담당관)
- 신고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2억원)
- 문의사항 : 청림혁신담당관실(☎710-4623)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 참고 사항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구분	장치의 기능	비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06.)”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 사양>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 ¹⁾	0 ~ 600A	0 ~ 500mmH ₂ O	-40 ~ 100°C	0 ~ 14pH
오차 ²⁾	±5% 이내			
동작온도	-20 ~ 60°C	-20 ~ 60°C	-20 ~ 60°C	0 ~ 80°C
온도보상	-	-	-	0 ~ 50°C ³⁾
운용전원	DC 24V 또는 AC 100 ~ 220V,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 ⁴⁾) 4 ~ 20mA (표시장치 ⁵⁾)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 ¹⁾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²⁾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 ³⁾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⁴⁾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 ⁵⁾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같음할 수 있음
-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 본 규격 및 사양은 가이드라인 개정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측정기기 설치 계약(계약일 기준)부터 적용됨
-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만족하는 제품 중 개정 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 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서식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신청(배출)업체	설치(시공)업체
	IoT 제조사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관련시설	설치대상	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예시) 도금(30m³)*2, 탈사(15m³)*2, 흡수에의한시설(300m³)*1	전류계(배출시설)				단위: 원 (VAT 제외)
	전류계(방지시설)				
	차압계				
	온도계				
	pH계				
	IOT 게이트웨이				
	VPN				
	합계				

※ 설치대상은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현장조사 후 적정 설치할 것이며 추가 및 변경사항(데이터 전송, 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5. 00. 00

신청(배출)업체 : (인)

설치(시공)업체 : (인)

서귀포시장 귀하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 (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상세히 기재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2)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환경부 2023년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16~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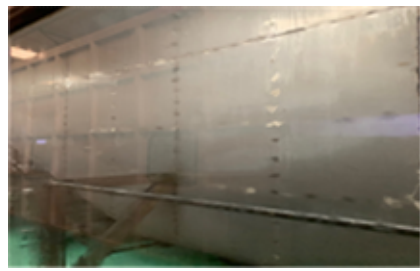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 기재

1) 방지시설-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pH계,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예시】 방지시설명(용량)	흡수에의한시설(250) GATE WAY 설치 위치	pH계, 전류계 설치 위치 (메인 제어판넬 설치)
		
방지시설 pH계(순환조)	방지시설 전류계(순환펌프)	방지시설 전류계(송풍펌프)

2) 배출시설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배출시설명(용량)	배출시설-탈지시설(용량)	탈지시설-2
		
화성처리시설	전류계 설치위치	

※ 예시) 해당 방지시설(흡수에의한시설)에 경우는 배출시설 4기를 포함함.

해당 배출시설의 경우는 연속식 공정으로 컨베이어벨트의 가동여부에 따라서 배출시설 4기의 가동여부가 확인이 가능함.

전류계의 경우 배출시설 각각의 설치가 불필요 하며 컨베이어벨트의 가동여부 확인이 가능한 1기를 설치 하고자 함

【서식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식 6】

보조금 반납 협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반납율 >

측정기기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일[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부착한 경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 시스템(GreenLink) 전송 확인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서식 7】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사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사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서귀포시장 귀하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귀포시장 귀하

【서식 9】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지원사업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계	국비	도비		

5. 보조사업 기간 : 2025. . ~ .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25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서귀포시장 귀하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12】

사 업 계 획 서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경비총액 : 천원(보조율 %)

보조금액 : 천원

자부담액 : 천원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13】

단체 소개서

[단체명 :]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 팩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202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수익(%), 기타(%) 			
주요사업 실 적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주요사업 계 획 (2025년)				

【서식 14】

사업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대한 합의서

본 합의서는 보조사업자인 경우 사후관리카드와 합철 관리하고, 채권자는 담보물건 서류와 합철 관리하고, 행정기관은 보조금교부서류와 합철 관리한다.

합의의 목적

- 재산(사업부지 및 건축물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의 사업동의 및 권리의 제한 등 합의사항을 통해 사후관리 기간(의무 사용기간) 중 보조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목적 이외의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코자 함.

재산의 표시 ※ 근저당 설정된 토지 또는 건물 등 현황에 맞게 작성

소재지번	지목	면적 (m ²)	권리자		
			소유자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사업동의 및 권리의 제한사항

-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상기 재산 상에 시설 및 장비가 설치 됨을 동의하며 의무 사용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된 재산(시설, 장비 등)에 대한 담보설정 및 매각, 임대, 교환, 압류 등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만일, 재산의 권리자가 상기 재산(토지, 건축물 등) 및 보조금 지원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인해 보조사업자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이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유지 및 운영이 곤란하다고 행정기관이 판단되어 보조금 회수를 결정하는 경우 재산의 권리자는 보조사업 관련 재산을 매각한 대금의 범위 내에서 당 사업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보조금 회수 결정금액)를 채권순위에 관계없이 1순위로 행정기관(보조사업 시행기관)에 반납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등의 의무 사용기간의 설정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 등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20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등)	성명 (대표자)	(인)
----	-------------------	-------------	-----

(재산의 권리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등)	성명 (대표자)	(인)
----	-------------------	-------------	-----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등)	성명 (대표자)	(인)
----	-------------------	-------------	-----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등)	성명 (대표자)	(인)
----	-------------------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귀하

